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과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고시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일원화하여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칙(고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품 등의 경우 기술기준 선정절차를 마련(안 제3조)
- 나.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기관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한 정책위원회로 일원화(안 제6조)
- 다. 성능적합증명 신청인으로부터 의뢰받아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불편 해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9일 까지 이메일(cnscodi@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
정책과(전화번호: 044-201-4357, FAX:044-201-5637, 메일 : cnscodi@
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